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702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5. 29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체 이용자 등의 실내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 마련(안 제3조제4호 신설)
- 나.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확대 (안 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5. 4. 29. ~ 2025. 5. 19.(20일 이상)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4.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 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##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(제7조제2항 관련)

### 1. 감면 대상 및 기준

구 분	대 상	비고
전액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7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. 어르신(65세 이상) 9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
50% 감면	1.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	

### 2.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
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
- 한부모가족 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(또는 복지카드)
-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
- 입소확인서 및 시설신고증
- 다둥이행복카드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
<p>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</b> <small>(제7조제2항 관련)</small></p> <p>1. 감면 대상 및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역 감면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                  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     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                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                  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6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7. 어르신(65세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8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                    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</li> <li>- 한부모가족 증명서</li> <li>- 장애인증명서(또는 복지카드)</li> <li>-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</li> <li>- 다둥이행복카드</li> </ul>	구분	대 상	비고	전역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7. 어르신(65세 이상) 8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	<p>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</b> <small>(제7조제2항 관련)</small></p> <p>1. 감면 대상 및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역 감면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                  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     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                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                  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                     7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8. 어르신(65세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9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                     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 감면</td> <td>1. 급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</li> <li>- 한부모가족 증명서</li> <li>- 장애인증명서(또는 복지카드)</li> <li>-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</li> <li>- 입소확인서 및 시설신고증</li> <li>- 다둥이행복카드</li> </ul>	구분	대 상	비고	전역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7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. 어르신(65세 이상) 9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	50% 감면	1. 급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	
구분	대 상	비고														
전역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7. 어르신(65세 이상) 8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비고														
전역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7.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. 어르신(65세 이상) 9.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어린이 10명당 1인) 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														
50% 감면	1. 급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2항제1호에 해당

제13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

-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해당사항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가족정책과 보육행정팀 오세봉
연 락 처	2627 - 1413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56호, 2024. 3. 8., 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공공형 실내놀이터(이하 “놀이터”라 한다)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

### 제3조(설치 및 운영)

-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1.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
  2.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
  3.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 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
-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·안전·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이용대상)**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 및 그 보호자
2.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.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개관 및 휴관)

-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1. 매주 월요일
 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,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
  3.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  4.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
-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6조(이용시간 등)

-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-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#### **제7조(이용료)**

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3.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
4.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

**제8조(이용 및 입장의 제한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협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)
5. 그 밖에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,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9조(행위의 제한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

1.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
2.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
3.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
4.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5.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
#### **제10조(이용자의 의무)**

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.

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1조(안전관리 및 보험가입)**

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1.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
2.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진행요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놀이터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

런이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2조(위탁운영)**

-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놀이터의 수탁 운영을 원하는 기관에서 조성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## **제13조(수탁자의 의무)**

-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·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위·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재정지원)**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 관계 법령

## 아동복지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85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**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**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3. 22., 2017. 10. 24., 2019. 1. 15., 2021. 12. 21., 2023. 7. 18.>

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 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9. 아동보호전문기관
10.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
11.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
12.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
13.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